

행정처분 의견 보고서

식품위생법 위반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71조에 의거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.

2015. 6. 9.

보고자 지방보건주사 최은열(인)

○ 처분 업소내역

업종	신고번호	업소명	업주명	소재지	위반내용	처분내용
휴게음식점	2012-00090	워너빈	연정선	성북구 화랑로32가길 17 (석관동, 1층)	영업자가 영업 신고된 장소가 아닌 곳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영업함.	시정명령

행정처분 진행내역	1) 2015. 5. 11 : 상기 업소가 영업신고 된 장소가 아닌 곳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영업한 사항을 적발함. 2) 2015. 5. 19 : 처분사전통지
처분자의 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한 바, 행정처분 내용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처분에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.
처분 결정	시 정 명 령 (시정기간 : 2015. 6. 23.까지)